

# 목포시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6
----------	----

제출년월일 : 2003. 6. 27.

발 의 자 : 황정호 의원의 8인

## 1. 개정이유

- 목포시의회의 원만한 회기 운영과 의원들의 충분한 안전 검토는 물론 목포시가 회기 전 충분한 안전준비를 통하여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함.

## 2. 주요골자

- 의안 제출시기 규정함으로 원만한 회기운영 준비  
시장은 당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안 제19조의2 신설)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5. 관련법령 : 해당없음

##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7. 예산상황 : 해당없음

## 8. 입법예고 : 해당없음

## 9. 사전협의사항 : 해당없음

##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의안의 제출시기) 시장은 당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의2(의안의 제출시기) 시장은 당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